양도성예금증서 양도(CD) 거래 약관

개정. 2011.11.09
개정. 2013.05.10
개정. 2017.01.26

제 1 조(약관의 적용) 이 약관은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와 고객(본 약관상 고객은 법인투자자로 제한한다)과 사이의 양도성예금증서 (이하 "CD"라 한다)의 거래에 적용된다.

제 2 조(계약의 성립) CD매매거래계약은 고객이 거래인감(또는 서명감)을 날인한 CD거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회사는 고객에게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증권카드(이하 "카드"이라 한다) 또는 CD(현물)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 3 조(거래 등) ① 고객은 CD매매거래를 할 때에는 카드에 의하여야 하며, 매매거래 후에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잔고 및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② 고객은 출금 또는 출고 시에 전표에 신고인감(또는 서명감)을 날인하여 카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매매의 중개 등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CD(현물)를 직접 교부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.

제 4 조(거래단가) ① 거래단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결정하며, 거래가액이 원미만 발생시에는 원미만은 절사한다.
거래단가 = 액면가액/(1 + 수익률 × 잔존일수 ÷ 365)
② 매매수익률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5 조(결제방법) CD매매의 수도결제는 당일결제로 하며 결제증거금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매약정대금의 100%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CD를 징구한다.

제 6 조(보관) 고객이 매수한 CD는 회사가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, 회사는 CD의 종목, 발행일, 만기일, 표면이율 등 제 조건이 동일물인 경우에는 혼장보관한다.

제 7 조(만기상환) 회사에 보관된 CD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고객은 만기일 3일전(지방소재은행이 발행한 CD의 경우에는 9일전)까지 CD(현물)출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 고객이 만기일 3일전까지 CD(현물)출고 신청을 하

지 아니한 경우 CD발행은행이 상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 당일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고객보유 CD를 재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회사 명의로 현금 상환 처리할 수 있다.

제 8 조(계산서의 교부) CD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CD 매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사고 등의 신고) ① 고객은 인감을 분실•도난•멸실 하거나 인감,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타에 유선 또는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,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, 도난,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.

제 10 조(면책) ① 회사가 입출금전표, 입출고전표 기타 제 신고서류 등에 찍힌 인감(또는 서명)을 미리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감)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급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감 등에 관한 위조•변조•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② 고객이 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카드 등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카드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양도 및 질권설정의 금지) 고객은 회사의 승인 없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을 할 수 없다.

제 12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

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기타)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제 15 조(분쟁의 해결)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,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16 조(관할법원)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1년 7월 26 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약관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3년 6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